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충청도청 온나라 백업시스템 교체 구축
- 발주기관: 충청도청
- 제조사·공급사: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
- 대상품목: 중복제거 백업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충청도청 온나라 백업시스템 교체 구축)에 따른 제품 구매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195,53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1년 3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도청



제조사명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충청남도청 온나라 백업시스템 교체 구축
- 발주기관: 충청남도청
- 제조사·공급사: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
- 대상품목: 중복제거 백업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충청남도청 온나라 백업시스템 교체 구축)에 따른 제품 구매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195,53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1년 3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청



제조사명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충청남도 온-나라시스템 백업시스템 노후 교체 및 증설
- 발주기관(갑) : 충청남도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코오롱베니트(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충청남도 온-나라시스템 백업시스템 노후 교체 및 증설”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해석하려 노력하고 그럼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의 해석에 준하여 해석한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중 IBM Power System S914 1식에 대하여 “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39,6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22일

“갑” (발주기관명) : 충청남도청



“을” (제조사 또는 공급자명) : 코오롱베니트(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충청남도 온-나라시스템 백업시스템 노후 교체 및 증설
- 발주기관(갑) : 충청남도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코오롱베니트(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충청남도 온-나라시스템 백업시스템 노후 교체 및 증설”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해석하려 노력하고 그럼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의 해석에 준하여 해석한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중 IBM Power System S914 1식에 대하여 “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39,6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22일

“갑” (발주기관명) : 충청남도청

“을” (제조사 또는 공급자명) : 코오롱베니트(주)

